

직원복지 차원의 비급여 제휴할인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글 편집실 참고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보건복지부)



Q 직원 복지 차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 플랫폼과 계약을 하여 사내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법무팀으로부터 의료법 56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닌지 검토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A 의료법 56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의료복지 플랫폼이 의료인을 광고 주체로 두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등에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례에서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병원과 제휴해 비급여 할인을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광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또는 면제 광고에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및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밖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부적으로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에 한정하여' 비급여 항목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한정으로 볼 수 있다. 🗨️

관련 법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 금지의 기준)

①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참고 사례

①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②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한정할 바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인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32829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Q A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6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